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

II. 검토의견

1. 건설 자재공급원 승인 등에 대한 근거 명확화 필요(안 제57조)

현행법 제57조제1항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 자재·부재(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개정안은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대상 중 “공급에 관한 사항”에 ‘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발주자 등의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함으로써, 현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수요자(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재공급원 승인 제도”²⁾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자재공급원 승인 제도에 대한 실체적 규정 없이 법률상 위임근거만을 마련하고 있는 바, 법률 체계 상 건설사업자 등이 자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1조부터 제41조까지에 따라 수요자(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레미콘·아스콘을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승인, 승인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수요자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을 점검할 수 있음.

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할 때 발주자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실체적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고시에서 정
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7조제1항 각 호는 자재공급원 승인권자로 발주자, 건설사
업관리 업무 수행자 또는 공사감독자,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공사감리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자재공급원 승인권자³⁾
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자 포함)로서, 민간발주사업의 경우 승인
권자를 발주자인 민간시행사를 제외한 공사감독자에 한정하여 품질시험
을 통한 적합한 자재가 현장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승인권자를 ‘발주자’로 규정하는 경우 승인권자에
민간시행사가 포함됨에 따라, 현행 자재공급원 승인제도의 법률 상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제도의 내용이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바, 이를 공공발주사업의 발주자인 ‘발주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
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발주청과,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
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사감독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급원 승인권자”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를 말한다.

제32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
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안 제57조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신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특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이하 “자재공급원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청 2.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특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 승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삭제> ③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④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한다. ④ (생략)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5.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 10.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8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8조(벌칙)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제57조제4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 10.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